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 라. 회부일자 : 2016. 11. 3.

II. 제안이유

- 공립 각급 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중요성과 체험학습 공간 제공으로 살아있는 에너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III. 주요내용(사업개요)

- 추진방식 : 협동조합형
- 시설형태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 건물현황 및 시행자

순	학교명	건물명	건축연도 (건물연령)	건물등급	옥상면적 (㎡)	시 행 자
1	금산초	본관동	1998 (18년)	A	1,279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건물명	설치면적 (㎡)	발전용량 (kW)	연간발전량 (kWh)	건설비	연 간 사용료
금산초	본관동	219.66	34.32	40,000	65,200	1,029

- 사용·수익허가조건

- 사용료 : 금1,029,600원(30,000원×34.32kW=1,029,600원)

- 허가기간은 10년(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사업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단, 사업기간 내 매각이나 대수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영구시설물 즉시 철거 및 시설물 철거비용 예치 조건
 - ※ 사업종료 시 계속 사용이 철거보다 교육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철거비용 예치 없이 기부채납 예정.
- 건물 구조검토, 설계, 건설, 학생안전시설 등 소요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
- 하자보수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같음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42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금천구에 위치한 금산초등학교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의견

-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기조로서¹⁾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및 (사)서울시민햇빛발전소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산 기반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만나 <20대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고,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성취할 것

1)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2016.1.28.) 추진에 따라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 '16~'17년 4천억원을 투자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하여 연내 1천개 학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

을 공동선언하면서 500개 학교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 지원 계획」(2013.9)을 수립하여 햇빛발전소에 참여한 학교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²⁾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의회도 제257회 정례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³⁾ 높은 임대료로 인한 사업성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학교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심의한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에너지부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동 안건의 제출경위에 대한 검토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⁴⁾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⁵⁾.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Tariff)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초기인 2002년도부터 FIT제도를 실시하였으나 FIT제도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정부는 2012년부터 500MW이상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13.7.30 일부개정, 2015.7.31. 시행)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6일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현행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면 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바,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시민햇빛발전사업자에게 이러한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이하이면서 RPS제도의 태양광 판매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50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적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3)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동 개정조례의 시행을 1년 유보하였음.

4)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전번호 05-0051),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 규정에서 모독지지대의 고정(지지대와 연결부, 기초지지대의 용접 및 볼트·너트 조임) 및 접지공사를 하여 지중화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2013.7.3> 및 산업통상자원부 답변<2013.7.9>).

5)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에 제출된 금산초등학교(금천구 시흥동 소재)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금산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16학년도 제2회 임시회, 2016.5.18.)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햇빛발전소 설치의 안전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 금산초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금산초 본관동 1,279㎡ 중 219.66㎡를 활용하여 34.32k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동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안전도 A등급⁶⁾을 받았는바, 동 건물 옥상에 동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하중의 증가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햇빛발전소 구조 검토 결과⁷⁾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건물연령)	건물 등급	구조 검토일	옥상면 적(㎡)	결 과
금산초	본관동	1998 (18년)	A	2016.8.8	1,279	구조안전성에 문제없음

- 또한 동 금산초 햇빛발전소는 햇빛발전소 시행자인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발전용량이 34.32kW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최초허가일 이후 10년간⁸⁾ 연간 1백 3만원의 사용료(kw당 30,000원⁹⁾)를 지급받고, 시행자는 설치비용(65백만원)과 허가기간 종료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안전시설 및 하자보수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금산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인 학교 내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시설사

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6) 금산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설치관련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2016.8.8., 제일구조주식회사)
- 7)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12398(2015.12.11.)
- 8) 최초 10년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1회 연장 여부 결정
- 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율 등)

⑦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는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료를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2016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2015.12.16.)

-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기간	사용료 및 대부료(단위: kW·년)
2016년	○ 설비용량 100kW 초과 : 35,000원 ○ 설비용량 100kW 이하 : 30,000원

※ 설비용량(kW)은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요금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햇빛발전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받고¹⁰⁾,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산초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에너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교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학교햇빛발전소의 유형은 협동조합형, 개인발전사업자형, 한전SPC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합형의 경우 절차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업자가 납부해야할 사용료는 낮은 반면, 한전SPC형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개인사업자형보다 사업 운영의 신뢰도가 높고 사용료 면에서 다른 형태보다 KW당 1만원이 높은 4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전SPC형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¹¹⁾.

[표-2]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구분	협동조합	민간발전사업자	
		개인발전사업자	한전SPC
햇빛발전소 설비 설치	○	○	○
설치 후 사후 유지·관리	○	○	○
사용료	kw당 3만원	kw당 3만원	kw당 4만원

- ▶ 공통점 : 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전적으로 부담
- ▶ 차이점 : 한전SPC만 사용료 1만원 높음

-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와 옥상 누수에 대한 우려 및 지속적인 행정업무 증가로 햇빛발전소 설치에 소극적인 바, 단기간내 실적 위주의 무리한 확대보다는 햇빛발전소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측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햇빛발전소 설치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연도별	2016 (2016.12.현재 실적)	2017	2018	계
학교수(교)	24	220	110	354

이상으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17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협동조합형)-300,000천원

11) 한전은 햇빛새싹발전소(주)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500개 참여 학교에 각각 최대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옥상부지 임대료로 해당 학교에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하며 △학교 전기설비 무상점검 △에너지 컨설팅(ESCO)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구축 △전기 및 에너지 관련 교육활동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태양광사업의 참여학교 확보를 위한 홍보와 학교 현장조사 및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적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함.(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6.12.7.)

[붙임]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단위: 천원, 기준일: 2016.10.)

형태	순	설립별	학교명	설치면적 (m ²)	발전용량 (kw)	사용료 (천원)	사업자명	설치기간	운영비	동의	구조검토
협동조합	1	공립	상원초	440	37.20	1,116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3.11~'14.4	○	보류	완료
	2	공립	삼각산고	113	19.00	570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3.3~'13.6	○	보류	완료
	3	공립	독산고	553	50.00	추진중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4	공립	인헌고	900	96.00	추진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5	공립	신림중	411.40	74.88	추진중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7	공립	회원중	308.88	56.16	추진중	강서양천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8	공립	누원고	200	19.00	576	도봉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16. 2.	○	동의	완료
	9	공립	면목고	506.22	92.04	추진중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10	공립	중화고	720.28	61.00	추진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12.~	○	동의	완료
	전기발전사업자	1	공립	창도초	565	99.75	2,992	(주)나눔발전소	'13. 9~'13.10	○	보류
2		신명초		492	76.00	2,280	(주)나눔발전소	'13.12~'14. 3	○		
3		대명초		575	99.75	2,992	(주)나눔발전소	'13.12~'14. 3	○		
4		묘곡초		565	99.75	2,992	(주)나눔발전소	'13.12~'14. 3	○		
5		성내중		565	99.75	2,992	(주)나눔발전소	'13.12~'14. 3	○		
6		시흥중		650	100.00	3,000	(주)이맥스시스템	'14. 2~'14. 3	○		
7		사립	광성중	1,117	73.78	2,213	KS솔라(주)	'13.11~'14. 1	○	비대상	완료
8		공립	영남초	665	79.80	2,394	(주)이맥스시스템	'15. 2~'15. 5	○	보류	완료
9			탑동초	480	82.35	2,470	탑동햇빛발전소	'15. 2~'15. 2	○	보류	완료
서울시시범학교	1	공립	배봉초	420	74.20	4,452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 7~'14.12	○	보류	완료
	2		수서중	420	74.20	4,452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 7~'14.12	○		
	3		문현중	360	51.67	3,10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4. 7~'14.12	○		
	4	사립	수도공고	428	75.00	4,500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 8~'15.11	○	비대상	완료
	5	공립	면동초	390	63.75	3,825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5. 8~'15.11	○	동의	완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5.7.31.] [법률 제11965호, 2013.7.30., 일부개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

당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6.7.7.] [서울특별시조례 제6259호, 2016.7.7., 전부개정]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